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

1998. 11. 10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12월 5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12월 10일
(제155회정기회 제5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복지환경국장 박환규)

가. 제안이유

○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5조,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,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8회 임시회의 (98.6.19)에서 변경 확정한 바 있으나,

○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 (기부채납)
-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

○ 위치 :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
○ 규모 : 답 3,779㎡

○ 시기 : 98 하반기
○ 재산가액 : 1,100백만원

□ 치매요양병원 건립

○ 위치 :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
○ 규모 : 3,302㎡ (1,000평, 지상4층 지하1층)
○ 병상규모 : 90병상
○ 재산가액 : 2,930백만원 (국비 50%, 도비 50%)
○ 사업시행자 : 충청북도지사
○ 수탁자 :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최정봉

※수탁근거 :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(충청북도조례 제2400호, 98.7.10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문기)

본 계획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추진중인
충청북도 노인및치매 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과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라 98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 부 서 류

가.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